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80호 2013. 8.16 (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16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4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6차) 18
- 하동군 고시 제2013-43호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20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529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21
- 하동군 공고 제2013-532호 2013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및의견제출 요령 공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13-533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
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32
- 하동군 공고 제2013-534호 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문 공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13-540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58
- 하동군 공고 제2013-543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정득주) 59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8월 16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6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장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

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점포 및 장옥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

하 동 군 공 보

(4) 제 380 호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납기) 점포와 장옥의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노점과 노상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 4 장 위탁관리

제13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을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징수자는 노점과 노상의 시장 관리인이 된다.
-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관리인의 책무) 시장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3.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4.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15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관리인 지정과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2. 시장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 3.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때
-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위탁징수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시장번영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

하 동 군 공 보

(8) 제 380 호

자가 될 수 없다.

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6 장 보 칙

제20조(지시감독) 군수는 시장관리인이나 수탁징수자에게 시장 관리나 시장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변상금)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정지
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③(특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380 호

[별표 1]

하동군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장날(제2조 관련)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 정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악양공설시장	악양면 정서리 271-7	매월 1일, 6일	정기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종공설시장	옥종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원)	
			1등지	2등지
상설시장	점포	3.3m ² 당 월	1,960	1,120
	장옥	"	1,400	680
		"	840	460
	노점	3.3m ² 당 매시일	200	100
		화물자동차	매시일 대당	1,000
	노상	경운기	"	700
리어카		"	500	300

구 분		기 준	요 액(원)		
			1급지	2급지	
정기시장	점포	1등지	3.3m ² 당 월	1,680	1,120
		2등지	"	840	560
		3등지	"	280	180
	장옥	1등지	"	1,120	840
		2등지	"	560	460
		3등지	"	180	120
	노점	1등지	3.3m ² 당 매시일	200	150
		2등지	"	150	100
		3등지	"	100	100
	노상	화물자동차	매시일 대당	700	500
		경운기	"	500	300
		리어카	"	300	200

1. 상설시장 : 하동공설시장
 2. 정기시장(1급지) : 진교, 옥종공설시장
 3. 정기시장(2급지) : 기타시장
 4. 1등지(2면이상 도로 접합장소), 2등지(1면이상 도로 접한 장소), 3등지(그 외)
- ※ 관광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화개장터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

[별지 제 1-1 호 서식]

시장사용허가신청 약약서(제4조 관련)

본인은 ()공설시장 점포(장옥)사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하고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공설시장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기간경과 후에도 계속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만료기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습니다.
2. 사용허가 받은 점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겠습니다.
3. 점포사용권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4. 점포 내에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점포는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점포의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8. 점포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겠으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9.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겠습니다.
10. 기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약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14) 제 380 호

[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점포(장옥)사용 허가증(제4조 관련)

① 사용시장 명칭			
② 위 치			
③ 사 용 장 소		사용면적	
④ 사 용 기 간			
⑤ 사 용 목 적			
⑥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⑦ 허가조건	㉠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 점포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만료기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장 점포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점포내에서는 일체의 주거용 난방시설을 하지 못한다. ㉤ 이동식 난로,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점포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점포의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점포 내외에 추가시설 또는 설비를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사용료는 납부 지정기간내 납부하여야 한다.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시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감수한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제4조 관련)

연 번	허가 구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시장 명칭	종류 (점포, 장옥, 기타)	상호 및 호수	면적 (m ²)	사용 허가 기간
		성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하 동 군 공 보

(16) 제 380 호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관련)

시장사용 변경(휴업,폐업,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허가자) 주소 :
- 사용자(허가자) 성명 : (남·여) 허가번호 :
- 변 경 사 항 : (허가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기타)
- 변 경 내 용
 - 당초 :
 - 변경 :
- 변 경 사 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관련)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시 장 명 :

○ 상호 및 호수 : , 호

○ 사용자 성명 : (남·여)

○ 보증금반환 신청액 : 원

○ 신 청 사 유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고시 제2013 - 42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6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58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76-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58	20070618	하동공원이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426-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석길 36	20070618	고석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32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224	20070618	도로구간이 호계천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하천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651-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예성길 77	20080402	예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793-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81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919-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1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하동군 고시 제2013 - 43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3. 01. 16.

하 동 군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내역 참조
2. 지정 대상사업의 종류 : 2012년도 사방사업(사방댐)
3. 지정사유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황폐계류를 정비하고 토사유출을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보전 및 자연환경을 유지코자 함
4. 사방지 지정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055-880-2483)로 문의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 529 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련분야에서 공헌한 최고의 명인을 발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명인의 공모(안 제2조)

다.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

라. 서류 및 현장 심사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심사방법 및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바. 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명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2일까지 하동군(통상교류과 전략통상담당, 전화550-2862, FAX 880-2869 sug1957@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8.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제안이유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련분야에서 공헌한 최고의 명인을 발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명인의 공모(안 제2조)
- 다.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라. 서류 및 현장 심사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심사방법 및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바. 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사. 명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다른시군 입법선례
 -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나. 합의 : 기획감사실

하동군 조례 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군수는 농특산물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인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4.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명인으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신청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동군 농특산물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자에 대한 생산, 제조·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

하 동 군 공 보

(24) 제 380 호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현장 심사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기준) ① 지정기준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 인자 중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명인으로 지정하되, 합계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의거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하동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하동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6) 제 380 호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① 지정 신청인 명 성 명	(한자)			②사 진 (3.5cm×4.5cm)
③ 생 년 월 일	④전화 번호	자택		
		H·P		
⑤ 주 소				
⑥ 업 소 명	⑦영업소재지			
⑧ 지정신청상품 (유 형)				
⑨ 주 요 이 력	근무기간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 ~			
	. . . ~			
⑩ 자 격 보 유	취 득 일	자 격 종 별	인 증 기 관	
⑪ 수 상 기 록	일 자	수 상 내 용	훈 격 (기 관 명)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구비 서류

1.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2. 상품 생산(제조·가공) 공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① 업 체 명	
② 성 명	(한글) (한자)
③ 생 년 월 일	
④ 생 산 경 력	년 월 ~ 년 월 까지 (총 년 월)
⑤ 이 력 소 개	
⑥ 수 상 경 력 등	
⑦ 기 타 참 고 사 항	

※ 관련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28) 제 380 호

[별지 제3호 서식]

신청 상품의 생산(제조·가공)공정 설명서

① 상 품 명						
② 주 재 료	(구입처 :)					
③ 부 재 료	(구입처 :)					
④ 제 품 특 징						
(제품 사진 삽입)						
⑤ 주 요 재 료	재 료 명	단 위	투 입 량	재 료 명	단 위	투 입 량
⑥ 단 계 별 제 조 공 정	※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작성					

※ 관련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합 계		100	
1. 신청자의 이력		20	
1-1 생산(가공)경력	•명인인증 생산 또는 가공 경력(5년 이상) 여부	10	
1-2 생산(가공)방법 설명	•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는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	10	
2. 상품의 차별성		25	
2-1 상품의 지역성	•주재료는 하동지역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부재료(가공 상품의 경우)는 자가 제조하고 있는가?	10	
2-2 상품의 차별성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원료, 가공 등)은 있는가? •소비 트렌드(맛, 편리성, 건강지향성, 기능성 등)를 반영하였는가? •포장이 고급화(상품 특성 반영)되어 있는가?	15	
3. 경제성(보급가치)		20	
3-1 희소성 및 인지도	•상품이 명품으로의 희소성이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	10	
3-2 상품화와 경쟁력	•대상품목의 상품화는 가능한가? •상품의 가격, 맛 등에서 경쟁력은 있는가?	10	
4. 기능의 보호가치		10	
4-1 기능의 보호 육성	•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특수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생산(가공) 방법의 계승 발전이 가능 한가?	10	
5. 판로확보 여부		15	
5-1 판매 및 홍보 대책	•소비처(납품처)는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가? •상품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은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홍보물(책자 리후렛 등) 제작되어 있는가?	15	
6. 향후 상품 육성 의지		10	
6-1 신청자의 육성의지	•신청자의 상품 육성 의지가 확고한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10	

평가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공고 제2013-532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략

- 기 간 : 2013년 8월 5일 ~ 8월 23일
- 대 상 : 하동읍 읍내리 89-2번지 외 272호
(2013.1.1 ~ 6.30 기간 중 분할, 합병, 신·증축 등의 주택)
- 장 소 : 하동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
- 열람방법 : 방문, 전화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8월 5일 ~ 8월 23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3. 9. 24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3. 8. 2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3-533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및 「하동군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 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 나.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조례 인용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 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조례개정내 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 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전부 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가. 제명을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인명피해보상 근거 마련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정비 및 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녹색환경과, 전화880-2572~3, FAX 880-2569, tigerbelt@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13. 8. 7
제 출 자 : 하 동 군수

1. 개정이유

조례 인용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목적과 용어의 뜻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다.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정비 및 위원회 심의절차를 삭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8)
 - 야생생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하 동 군 공 보

(34) 제 380 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8. 7~ 2013. 8. 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언론보도(신문 등), 공보지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작지에 설치하는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농업·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8. “농작물 등 피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말한다.

제2장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하동군에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국립공원 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 (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
6.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제4조(지원대상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① 지원대상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예방시설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되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80, 자부담 100분의 20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6조(사후관리)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5년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방시설을 이전·철거하여 당초 설치지역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7조(피해보상) ① 군수는 하동군 관내에서 농업 등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다만, 비 농업인이 농업 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보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

하 동 군 공 보

(38) 제 380 호

업인 등을(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 및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 등 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2. 타 법령에 의거 농업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4장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제12조(보상대상 및 피해면적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하동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별표1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14조(지급액)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한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고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제외)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380 호

<별표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기준

○ 피해보상금 산출 = 작물별 단위면적(m²)당 소득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작물의 생육단계 및 타 작물 대체 여부]

1)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
※ <http://amis.rda.go.kr/> ⇒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경남) [농촌진흥청]

2) 피해면적 산출

구 분	과 수	전작물(벼 포함)
피해면적	○ 1주당 측량한 재식면적 × 피해주수 ※ 실제 재식면적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과수원정비지원사업, 폐업지원사업)에 따른 표준재식면적 등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가로 × 세로 ※ 현지조사시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출

3) 피해율 산출

분 야	과 수 분 야	전작물(벼 포함) 분 야
피해율	○ 적용 범위 및 기준 - 피해율 적용 : 1% ~ 100% - 전체 피해주수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평균 낙과율 또는 훼손율로 적용 산정 - 착과되지 않은 과수의 경우 생육단계, 가지 훼손정도 등을 반영하여 피해율 적용 가능	○ 적용 범위 및 기준 - 피해율 적용 : 1% ~ 100% - 현장조사결과 실제 피해면적내의 농작물 세부 피해정도(비율) 반영

4) 농작물의 생육단계 및 대체 가능여부 반영

구 분	과 수 분 야	전 작 물 (벼 포함) 분 야
생육단계	○ 생육단계별 차등기준 적용 - 과수별 성장단계/기대 생산량 등을 반영, 단계별 차등 산정 [차등 기준 적용 예시] - 초기(미착과) 과수 : 20% - 착과 과수 : 40% - 집중 생산과수 : 80% - 노후(생산량 감소) 과수 : 60%	○ 생육단계별 차등기준 적용 - 과종 ~ 수확단계별로 차등 산정 [차등 기준 적용 예시] - 과종시기 : 20% - 생육초기 : 40% (보충/타 작물 대체식재 가능) - 생육후기 : 60% - 수확시기 : 80%
공 통	○ 환경부 고시 규정에 따라 최대 80% 까지 적용 가능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2013. 8. 7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조례 인용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 나. 목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안 제1조)
- 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라.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 정비 및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8)
 - 야생생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하 동 군 공 보

(42) 제 380 호

-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8. 7~ 2013. 8. 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언론보도(신문 등), 공보지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380 호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읍·면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읍·면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장의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피해조사) ① 관할 읍·면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시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380 호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변경사유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 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하 동 군 공 보

(48) 제 380 호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m ²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첨부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하 동 군 공 보

(50) 제 380 호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시(군)	면	동(리) 번지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해자성명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내 용		⑧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 피 해 지 역 사 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 피해액산정방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	⑭ 보상금 산정을			
	⑮ 피 해 보 상 금			
기타 조사 의견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해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시(군)	면 동(리)	번지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지 역	시(군)	면 동(리)	번지
	⑥ 피 해 면 적		⑦가해야생동물	
	⑧ 피 해 내 용			
	⑨ 피 해 보 상 금 산 정 내 역			
	⑩ 피 해 보 상 금			
기타 의견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0 0 0 귀하

하 동 군 공 보

(52) 제 380 호

<별지 제9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 피 해 보 상 금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하동군 공고 제 2013 - 5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대상 : 별첨참조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4. 공고기간 : 2013. 8. 2. ~ 2013. 8. 17.(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 거소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기본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하동군청 건설과에서 고지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농협 301-0053-2143-31)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하동군청 건설과 교통행정계 ☎(055-880-2396)

2013. 8. 2.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54) 제 380 호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내역(독촉)

순 번	고지번호	적발일시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2012-000248	2013.02.12	09노6987	송인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59번길 19-9,303호(봉명동)	42,000	2013.05.24	반송합투함
2	2013-000077	2012.12.27	51고3856	하역만	경남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38,103동 907호(미진스위트빌아파트)	42,960	2013.05.27	반송합투함
3	2013-000261	2013.02.15	15구5524	(주)길상건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46-0	42,480	2013.06.13	수취인불명
4	2013-000342	2013.03.11	46모7501	(주)동서무역(상품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맥절길124번길 20-8,203호(대회동)	42,000	2013.06.14	수취인불명
5	2013-000333	2013.03.07	52머4595	박해은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	42,000	2013.06.17	수취인불명
6	2013-000349	2013.03.15	90두5672	하민수	충남 논산시 교와길 74, 302호(내동)	42,000	2013.06.17	이사감
7	2013-000345	2013.03.12	41보8505	송용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7-1	42,000	2013.06.18	수취인불명
8	2013-000388	2013.03.27	97나1242	이성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신촌길 6-11	42,000	2013.06.20	수취인불명
9	2013-000385	2013.03.26	48머1995	박신혜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15, 101호(흥한타운)	42,000	2013.06.24	수취인불명
10	2013-000390	2013.03.28	50주8195	수상종합건설(주)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05번길9-0,103호(삼정동)	42,000	2013.07.05	수취인불명
11	2013-000439	2013.04.10	18루1226	박찬형	경남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16	42,000	2013.07.05	이사감
12	2013-000230	2013.02.01	51고3304	배상용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5-7	42,960	2013.07.05	이사감
13	2013-000422	2013.04.03	82머9678	염종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54	42,000	2013.07.05	수취인불명
14	2013-000248	2013.02.12	09노6987	송인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59번길 19-9,303호(봉명동)	42,480	2013.07.09	반송합투함

하 동 군 공 보

(55) 제 380 호

15	2013-000333	2013.03.07	52대 4595	박해은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	42,480	2013.07.09	수취인불명
16	2013-000342	2013.03.11	46모 7501	(주)동서무역(상품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역절길 124번길 20-8, 203호(대회동)	42,480	2013.07.09	수취인불명
17	2013-000349	2013.03.15	90두 5672	하민수	충남 논산시 교와길 74, 302호(내동)	42,480	2013.07.12	이사감
18	2013-000438	2013.04.10	09조 4789	정호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매치로 244번길 31, 107호(상대원동, 현대1밸리)	42,000	2013.07.12	이사감
19	2013-000345	2013.03.12	41보 8505	송용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7-1	42,480	2013.07.17	수취인불명
20	2013-000261	2013.02.15	15구 5524	(주)길성건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46-0	42,960	2013.07.17	수취인불명
21	2013-000388	2013.03.27	97나-1242	이성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신촌길 6-11	42,480	2013.07.22	수취인불명
22	2013-000507	2013.04.30	97나-1242	이성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신촌길 6-11	42,000	2013.07.22	수취인불명
23	2013-000474	2013.04.18	68서 5696	설경철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8-8	42,000	2013.07.22	이사감
24	2013-000472	2013.04.16	68서 5696	설경철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8-8	42,000	2013.07.22	이사감
25	2013-000385	2013.03.26	48아 1995	박신혜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15, 101호(흥한타운)	42,480	2013.07.22	수취인불명
26	2012-000248	2013.02.12	09노 6987	송인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59번길 19-9, 303호(봉명동)	42,960	2013.07.24	반송합투함
27	2013-000481	2013.03.15	90두 5672	하민수	충남 논산시 교와길 74, 302호(내동)	42,000	2013.07.31	이사감
28	2013-000390	2013.03.28	50주 8195	수성종합건설(주)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05번길 9-0, 103호(삼정동)	42,480	2013.07.31	수취인불명

하 동 군 공 보

(56) 제 380 호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 송달내역(부과)

순 번	고지번호	적발일자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2013-000439	2013.04.10	18루1226	박찬형	경남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16	40,000	2013.05.24	이사감
2	2013-000422	2013.04.03	82머9678	염종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54	40,000	2013.05.27	수취인불명
3	2013-000438	2013.04.10	09조4789	정호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107호(상대원동,현대1벨리)	40,000	2013.05.28	이사감
4	2013-000507	2013.04.30	97나1242	이성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신촌길 6-11	40,000	2013.06.10	수취인불명
5	2013-000481	2013.04.22	90두5672	하민수	충남 논산시 교외길 74, 302호(내동)	40,000	2013.06.17	반송함투함
6	2013-000550	2013.05.15	97나1242	이성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신촌길 6-11	40,000	2013.06.20	수취인불명
7	2013-000548	2013.05.15	서울53머3021	정삼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 132-510	40,000	2013.07.02	수취인불명
8	2013-000588	2013.05.30	97더4050	김동기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석길 7-5	40,000	2013.07.03	이사감
9	2013-000577	2013.05.20	82머9678	염종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54	40,000	2013.07.05	수취인불명
10	2013-000589	2013.05.30	경남80배1800	강경구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26-1,305호	40,000	2013.07.08	수취인불명
11	2013-000581	2013.05.27	09조4789	정호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107호(상대원동,현대1벨리)	40,000	2013.07.12	이사감
12	2013-000624	2013.06.14	51고3984	김인순	경남 하동군 황천면 황보길 12-28	40,000	2013.07.23	수취인불명
13	2013-000611	2013.06.10	62누4322	김달수	경남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253-4	40,000	2013.07.23	이사감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 송달내역(처분통지)

순번	고지번호	적발일자	차량번호	성명	주소	과태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2013-05300003	2013.05.30	97너4050	김동기	경남 하동군 직량면 고석길 7-5	32,000	2013.06.10	이사감
2	2013-05200009	2013.05.20	82머9678	염종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54	32,000	2013.06.10	이사감
3	2013-05300004	2013.05.30	경남80베1800	강경구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26-1,305호	32,000	2013.06.13	수취인불명
4	2013-05270006	2013.05.27	09조4789	정호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107호(상대원동,현대1밸리)	32,000	2013.06.13	이사감
5	2013-06100003	2013.06.10	62누4322	김달수	경남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253-4	32,000	2013.06.24	이사감
6	2013-06140001	2013.06.14	51고3984	김인순	경남 하동군 흥천면 흥보길 12-28	32,000	2013.06.26	수취인불명
7	2013-06170001	2013.06.17	31누5500	정훈	경남 김해시 가야로475번길 6-16	32,000	2013.07.12	주소불명
8	2013-06250006	2013.06.25	01소8183	박태순	전남 순천시 감시터2길 30(동외동)	32,000	2013.07.12	이사감
9	2013-06180003	2013.06.18	83저5424	이정주	울산시 동구 진성5길 45(전하동)	32,000	2013.07.17	수취인불명
10	2013-07040004	2013.07.04	88어9756	석은주	경남 진주시 금곡면 구암두문로986번길 26	32,000	2013.07.23	이사감
11	2013-07090004	2013.07.09	09조4789	정호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107호(상대원동,현대1밸리)	32,000	2013.07.24	이사감

하 동 군 공 보

(58) 제 380 호

하동군 공고 2013-540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3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채용분야	채용인원
기간제근로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원	2명

2. 주요업무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 그밖의 부여받은 업무

3. 근무기간 : 2013. 9. 2. ~ 2013. 10. 15. (44일간)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39,000원/일(간식비 제외)
- 근로시간
 - 주5일(월~금) : 09:00~18:00(8시간)
 - 휴게시간 : 12:00~13:00
- 근로조건 충족시 주휴, 휴일근무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분 공제

5.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하동군 관내 주소를 두고(실 거주자)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Excel 및 한글 사용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현장 조사 등에 지장이 없는 신체 조건 및 운전면허 소지자 우선

6. 공고 및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13. 8. 8. ~ 8. 28.
- 접수 및 면접기간 : 2013. 8. 22. ~ 8. 28
(09:00 ~ 18:00)
- 접 수 처 : 경남 하동군청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 880-24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류접수시 면접을 병행하므로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요망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9.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후 2013. 8. 30(금) 개별통보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055-880-2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543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8. 8

하 동 군 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 획 기 간 : 2013. 08. 09 ~ 2013. 10. 08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일원	정득주	총렵 (자력)	2013. 08. 09 ~ 2013. 10. 08	허가기간 내 까치, 비둘기 10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